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 우리펫보험





- 1. 약관 이용 가이드북
- Ⅱ.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Ⅲ. 상품 안내
- IV. 보통약관
- V. 특별약관
- VI. 별표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 (Hi2410)

년 현대해상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다이렉트굿앤굿우리펫보험(Hi2410)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3. 반려묘관련 특별약관

3-0 반려묘관련 보장 공통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의 질병 또는 상해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 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반려묘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반려묘의 소유와 관련하여 보험사고로 손해를 입은 사람을 말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의 소유자에 한합니다.

용 어	정 의
반려묘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를 말하며, 이 계약에서 가입 가능한 반려 묘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와 거주를 함께하고 있는 고양이(猫) 를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기재된 고양이(猫)는 이 보험의 가입 대상 이 아닙니다. 가. 보험가입 당시의 연령이 생후 60일 이하 또는 만10세를 초과하는 고양이(猫) 나. 판매점,브리더 등이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 관리하는 고양이(猫) 다. 특수 목적의 고양이(猫) 라. 흥행을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마. 유기동물 보호센터 등에서 사육,관리하는 고양이(猫)

2. 지급사유 및 보상관련 용어

용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반려묘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적으 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발생하는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 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 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	상해를 제외한 상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 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 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상비율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곱해져 보상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 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 다.

3-1 반려묘의료비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묘 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 반려묘 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3-1-1 특약 이름[반려묘입원의료비॥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묘입원의료비보험금(이하 "입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입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입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통원의료비보험금과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208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7인전/3인전 중 택1	여가
고보장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1,000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예시안내] <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31일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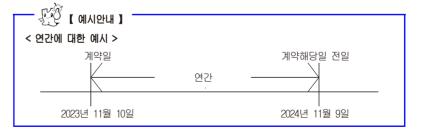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부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4-03-01 15만원, 2024-03-02 수술 155만원
- ·지급금액 = [(15만원 5만원) x 8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5만원 5만원) x 8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만원 + 120만원 = 128만원
-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묘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당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관련법규 】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마
- 9.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묘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하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낭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 요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묘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3-1-2 특약 이름[반려묘통원의료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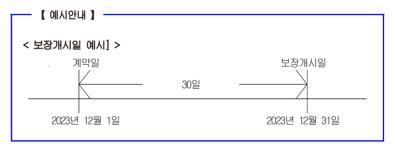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기간중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에게 상해 또는 질병(이하 "사고"라 합니다)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입원을 동반하지 않은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 대해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반려묘통원의료비보험금"라 합니다.)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원의료비보험금은 1일당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에서 1일당 자기 부담금을 차감한 후, 보상비율(50%/70%/80%/90% 중 택1)을 곱한 금액이며 1일당 보상한 도액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1일 지급한도로 합니다.

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및 1일당 보상한도액은 계약자가 계약시 선택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비율 및 금액이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회사가 지급하는 연간 통원의료비보험금의 총 합계는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의 입원의료비보험금와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구분	1일당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연간 총 보상한도액
일반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15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일반영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00만원	7인권/3인권 중 택1	여가
고보장형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1일당 30만원	1일당 1만원/3만원	^{언건} 1,000만원
	수술을 한 경우	1일당 250만원	/5만원 중 택1	

③ 제1항에서의 보장개시일은 질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I MITIOHII I

< 의료비보험금 산출방식>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1일당 자기부담금) x 보상비율, 1일당 보상한도액] 중 적은 금액

< 의료비보험금 지급금액(예시)>

- ①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형, 보상비율 70%, 자기부담금 3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1일당 의료비 : 35만원
 - ·지급금액 = [(35만원 3만원) x 70%, 15만원] 중 적은 금액 = 15만원
- ② 수술을 한 경우 (고보장형, 보상비율 80%, 자기부담금 5만원 가입)
- ·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 2024-03-01 15만원, 2024-03-02 수술 155만원
- ·지급금액 = [(15만원 5만원) x 80%, 30만원] 중 적은 금액
 - + [(155만원 5만원) x 80%, 250만원] 중 적은 금액
 - = 8만원 + 120만원 = 128만원

⑤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반려묘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 된 경우에도 만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부터 365일 이내의 치료인 경우에 한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수의사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비용은 회사가 전액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물병원 및 수의사의 정의는 수의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관련법규 】

- ※ 수의사법 제2조(정의)
- · 수의사: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하다
- · 동물병원: 동물진료업을 하는 장소로서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진료기관을 말한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피보험자가 부담한 반려묘의 의료비'는 각종 할인 및 강면, 사후환급금액 등을 제외한 실수납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6. 최초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 7. 보험개시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질병,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8.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마
- 9.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소해
- 10.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 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2.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②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반려묘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2.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처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아래 의 질병
 - : 고양이범백혈구감소증, 고양이칼리시바이러스감염증,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지염, 고양이백혈병바이러스감염증
-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 4.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 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 5. 대상 반려묘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 6.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7. 미용으로 인한 비용
- 8.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 9.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유치잔존,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항문 당 제거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 10. 입원중의 식이(食餌)에 해당하지 않는 음식물 및 식이요법, 그리고 수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 이외의 것(건강보조식품, 의약품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한방약, 의약부외품 등)
- 11. 한의학(단, 침구는 제외합니다.), 인도의학, 허브요법, 아로마테라피 등의 대체의료
- 12.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상품 값 포함) 및 귀세정제(이어클리너), 벼룩, 젝켄, 모공충의 제거비용
- 13. 펫호텔 비용 또는 위탁료. 산책료. 카운슬링 비용. 상담료. 지도료 및 이와 동종의 비용
- 14. 왕진료, 가입동물의 이송비, 동물병원에 가지 않고 약제만 배달되는 배달료 및 이와 동 종의 비용

- 15. 안락사 비용, 시체처치 및 해부검사, 장례비, 이장비 등 사후에 필요한 비용
- 16. 마이크로칩의 삽입비용,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비용(우송비 포함)
- 17. 과잉진료행위로 인한 비용
- ③ 회사는 가입한 반려묘에 대하여 아래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비, 비용 또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1. 치석제거 및 치아부정교합 등 치과 치료비용, 구강내 질환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반려묘 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 반려묘 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3-2-1 특약 이름[반려묘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3-1-1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이하 '반려묘입원의료비비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묘 입원의료비를 반려묘입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보장개시일 예시] > 계약일 보장개시일 30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31일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3-2-1 반 려묘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3-1 반려묘의료비॥

3-2 반려묘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묘입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반려묘관련보장 공통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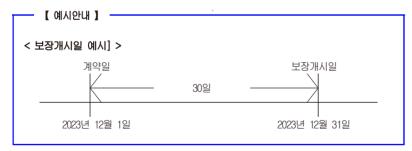
③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한도(보상비율,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는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과 별도로 각각 적용하지 않습니다.

3-2-2 특약 이름[반려묘통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3-1-2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이하 '반려묘통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3항에도 불구하고 치과질환(치석제거 포함) 및 구강질환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반려묘통원의료비를 반려묘통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상해의 경우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③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제1항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갱신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한도)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보험금은 '반려묘통원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 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은 3-1 반려묘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3-2-1 반려묘입원의료비확장보장(치과및구강질환)(갱신형)보장과 합산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3-3 특약 이름[반려묘사망위로금(갱신형)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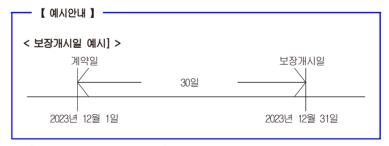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반려묘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 반려묘 사망위로금	반려묘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사망은 동물병원에서 적법하게 시행된 안락사를 포함합니다. 단, 이 경우 동물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약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 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2.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 이내에 발생한 손해. 단. 이 계약이 갱신계약

- 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3.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 으로써 발생한 손해
- 4.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손해,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 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 한 특성에 의한 사고
- 8. 위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9.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 10.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묘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